신구조문대비표
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 제28372호, 2017.10.17., 일부개정]	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 제28579호, 2018.1.9., 일부개정]
제25조(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) ① 시·도지사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.	**제25조(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)** ① -.
1. (생　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경계설정에 관한 기준	2. - - - - - - - - - - - - - -
가.·나. (생　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다.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취락지구, 학교, 종교시설, 농경지 등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관통하지 아니할 것	다.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(이하 "취락지구"라 한다)- -
3. (생　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　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7조(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)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풍치와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.	**제27조(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)** -.
1. ~ 4. (생　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	5. 취락지구- -
6. (생　략)	6. (현행과 같음)
<신　설>	7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재해로 인하여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 성토(盛土)하는 행위
<신　설>	8. 취락지구 내에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로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
제32조(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) ①법 제28조제1	**제32조(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)** ①취락지구- -

항에 따른 취락지구(이하 "취락지구"라 한다)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 (생　략) ② (생　략)	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44조(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)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의2. (생　략) <신　설> 4. (생　략)	**제44조(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)** 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－. 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 3의3.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4. (현행과 같음)